

제323회 임시회

2013. 9. 4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광진 의원 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(안 제2조)

나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(안 제3조)

다. 연합회 임원의 선출, 임기 및 위촉 해제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총회 및 의결(안 제8조, 제9조)

마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금지행위(안 제10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'충청북도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'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5(전국연합회의 구성) 제2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,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